2025년 보조공학기기 연구개발사업 추진 계획(안)

2025. 1.

한국장애인고용공단
보조공학센터

- 목 차 -

Ⅰ. 개요 ····· 1

1. 사업목적 ····· 1

2. 추진배경 ····· 1

3. 추진방침 ····· 1

Ⅱ. 세부추진계획 ····· 2

1. 개요 ····· 2

2. 연구개발 과제 범위 ····· 2

3. 신청자격 ····· 3

4. 개발비 지원 ····· 3

5. 사업공고 및 신청서접수 ····· 3

6. 사업설명회 ····· 4

7. 평가위원회 구성·운영 ····· 4

8. 선정방법 ····· 4

9. 선행기술 확인 및 개발비 원가계산 ····· 5

10. 협상 및 계약 ····· 5

11. 연구개발비 지급 ····· 6

12. 계약과제 관리 및 평가 ····· 6

13. 연구개발비 정산 ····· 8

14. 사후관리 ····· 8

Ⅲ. 추진일정 ····· 9

Ⅰ. 개요

1. 사업목적

○ 장애인의 직업생활에 필요한 우수한 신규 보조공학기기를 연구개발하여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직업유지와 고용창출 지원

○ 직업생활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 제품개발 및 국산화를 통해 장애인 근로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업무 효율성과 생산성 제고

○ 수요자 중심의 신규 보조공학기기 연구개발 지원으로 국내 보조공학기기 관련 산업기술 개발 촉진 및 활성화

2. 추진배경

○ 장애인 근로자의 직업생활 어려움에 대한 수요와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개인별 특성을 고려한 서비스 제공 필요

○ 장애인과 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신규 보조공학기기를 개발하여 보급하고 국내 보조공학기기 산업 육성 지원 필요

○ 다양한 장애유형, 작업 환경에 맞는 맞춤형 보조공학기기 수요 증가와 맞춤의 상용화 필요

3. 추진방침

○ 자유공모 방식으로 제안신청서를 접수하며, 우편·택배로만 접수 가능

○ 장애인 근로자의 근무 환경 개선 효과와 개발수요, 단기(1년 이내) 개발을 통한 상용화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연구개발 과제 선정

○ 과제선정을 위해 보조공학기기 연구개발을 위한 수요 및 동향 조사 결과, 사용자 의견, 자문회의 의견 수렴 결과 등을 반영

Ⅱ. 세부추진 계획

1. 개요

○ (연구개발 기간) 2025년 3월 중순 ~ 11월 중순(8개월)

○ (연구개발 예산) 1,200,000천원(과제당 150,000천원 내외)

2. 연구개발 과제 범위

○ 신규 보조공학기기 연구개발 및 국산화

- 장애인의 직업생활을 개선하고 업무 역량을 향상시키는 신규 보조공학기기
- 국산화가 시급하거나 외산품을 대체할 수 있는 보조공학기기

○ ICT 보조공학기기 연구개발

- 4차 산업 시대 활용되는 신기술(AI, IoT 등) 또는 SW프로그래밍 적용
- ICT 기술이 적용된 장애인을 위한 신규 보조공학기기 제품·서비스

○ 다양한 근무 환경에 활용도 높은 보조공학기기 개발

- 기존 제품(외산) 중 단순 기술을 활용한 보조공학기기
- 사용자 확대 및 다양한 고용현장에 보급 가능한 보조공학기기

○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소수 장애유형을 위한 보조공학기기 개발

- 지원 비중이 낮은 장애유형에게 보급 가능한 보조공학기기
- 새로운 영역의 근무환경을 보완하여 직무수행을 가능하게 하는 보조공학기기

○ 장애인 근로자의 안전성을 강화하는 보조공학기기 개발

- 산업재해·안전사고 예방에 중점을 둔 보조공학기기
- 장애인 근로자의 안전에 기여할 수 있는 보조공학기기

3. 신청자격

○ 대상 분야의 기술을 연구개발하여 제품화 및 상용하고자 하는 기업 또는 단체

○ 용역 범위 내에서 기업 또는 단체 간 컨소시엄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음

※ 제외대상

① 제안한 기술과 동일 또는 유사한 과제로 정부지원금을 지원받아 수행하거나 완료한 경우

② 이행보증보험증권 발급이 불가한 경우

③ 신청일 현재 타 사업 수행에 따른 정산 환수금, 기술료 등이 미납상태인 경우

④ 신청일 현재 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의 적용을 받는 경우

⑤ 과제완료 후 상용화가 불가한 경우

4. 연구개발비 지원

○ 공단 지원금: 연구개발비의 80% 이내

*「보조공학기기 지원 업무처리규칙」제52조 제1항

- 사용용도: 인건비, 직접비, 위탁개발비, 간접비
- 지원방법: 선급금과 잔금으로 나누어 지원

*「보조공학기기 지원 업무처리규칙」제53조 제2항

○ 기업 부담금: 연구개발비의 20% 이상

- 현금과 현물로 구성하되, 전체 연구개발비의 10% 이상은 반드시 현금 부담

*「보조공학기기 개발지원 업무처리규칙」제52조 제2항

5. 사업공고 및 신청서 접수

○ 접수기간: 2025. 1. 20.(월)~2. 19.(수) 18:00까지

○ 접수방법: 우편 또는 택배접수

○ 공고방법: 일간지 등 1개소, 공단 홈페이지 등

○ 제출서류

- 붙임 2의 연구개발사업 제안신청서(요약서 및 제안서 포함)

  * 공단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다운로드받아 작성

- 법인등기부등본, 사업자등록증 각 1부

○ 유의사항

- 제안신청서(요약서 및 제안서포함)는 한글파일로 작성하여 제출 완료 후 공단 담당자의 이메일(ydh0912@kead.or.kr)로 송부

  * 이메일 첨부 파일명“업체명-2025년 연구개발과제 제출”

○ 공고문: 붙임 1 참조

6. 평가위원회 구성·운영

○ 제안신청서 및 계약 과제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 및 평가를 위하여 내·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 운영

-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 정수의 2분의 1이상은 외부위원으로 위촉(평가대상 기업 및 단체와 직·간접 이해관계자는 제외)

-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, 공단 담당자를 간사로 지명

-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

○ 평가위원회는 1차 사전검토 및 2차 대면평가를 통해 연구개발과제 주관기관을 선정하고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중간평가 및 최종평가 실시

7. 선정방법

○ 1차 사전검토

- 평가위원회에서 제안신청서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 및 서면 평가 진행

- 붙임 3의 ‘주관기관 선정평가서’에 따라 평가한 결과, 위원별

평가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하고 산술 평균한 점수가 85점 이상*인 연구개발과제에 대해 2차 대면평가 대상 과제로 선정

* 「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」(2024.9.13.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721호) 제8조 준용

○ 2차 대면평가

- 평가대상 기업이 평가위원회에 직접 출석하여 제안신청서 내용 발표 및 위원 질의응답 실시
- 붙임 3의 '주관기관 선정평가서'에 따라 평가한 결과, 위원별 평가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하고 산술평균한 점수가 85점 이상인 과제에 대해 고득점순으로 우선협상 대상과제 선정
- 우선협상 대상과제에 대하여 연구개발 예산 및 자부담 비율에 대한 검토 의견 수렴

8. 선행기술 확인 및 연구개발비 원가계산

○ 우선협상 대상과제는 외부전문기관(원가계산 전문기관 등)에 의뢰하여 선행기술(유사한 기술 및 기기 존재 여부,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 침해 여부) 확인 및 연구개발비에 대한 원가계산* 실시

* 「회계규정시행규칙」 제48조

9. 협상 및 계약

○ 적합한 우선협상 대상과제에 대해 평가위원회의 의견과 원가계산 전문기관의 연구개발비 자문 결과, 연구개발 예산 등을 감안하여 기술협상 및 가격협상 실시*

* 「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」(2024.9.13.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721호) 제10조부터 제14조 준용

○ 협상이 성립된 경우에는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,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, 특수조건 및 「보조공학기기 개발지원 업무처리규칙」 제3장의 내용 등을 조건으로 하여 계약 체결*

* 「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」(2024.9.13.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721호) 제15조 준용

○ 계약 체결 시 계약상대자로부터 계약보증금을 개발비의 10% 이상 금액을 납부*(**이행보증보험증권** 제출)토록 조치

*「회계규정 시행규칙」제64조

- 단,「회계규정」제64조 제4항에 따라 계약보증금 납부 면제 시에는 계약보증금 지급각서「회계규정 시행규칙」별지 제45호 서식을 징구

10. 연구개발비 지급

○ 공단 지원금은 계약 체결 후 주관기관의 신청에 따라 선금은 협약 체결 후 15일 이내에 최대 70%를 지급하고, 잔금은 최종평가 결과 '적정'(성공)으로 판정 시 15일 이내 지급

- 선금 지급 시 연구개발에 대한 이행 담보를 위해 **이행보증보험증권**을 징구
- 주관기관의 투명한 연구개발비 수령 및 집행을 위해 현금을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별도 계정으로 관리토록 조치

11. 계약과제 관리 및 평가

○ 제안 신청서 변경

- 연구개발 목표 및 기간, 개발책임자 변경, 개발비 예산 비목 간 변경 등 주요사항은 사전에 공단의 승인을 받아 변경하고, 일반사항(주관기관 대표자, 상호 및 주소 등) 및 참여연구원 변경 등은 사전 통보를 통해 변경

○ 진도관리

- 매월 마지막 주에 개발책임자에게 붙임 4의 월간 진도관리보고서를 징구하여 진도를 점검하고, 공단에서 조치를 요구한 경우에는 그 조치결과를 차기 월간 진도보고서에 포함하여 징구*

*「보조공학기기 지원 업무처리규칙」제55조

○ 중간보고 및 평가

- 과제 수행기간이 50% 이상 경과한 때에는 주관기관으로부터 중간보고서를 제출받아 평가위원회에서 붙임 5의 평가표에 따라 중간평가 실시

*「보조공학기기 지원 업무처리규칙」제56조

- 중간평가 결과 “보완”으로 평가된 과제는 보완기간 및 내용에 대한 시정조치 계획서를 징구하고, 조치완료 시 시정조치 완료 보고서를 징구하여 공단의 이의가 없을 경우 계속 사업 수행
- 중간평가 결과 “부적정”으로 평가된 과제는 계약을 해지하고, 기 사용한 공단 지원금 정산을 통해 잔액 및 현물 회수 등 조치

○ 사용자평가 진행

- 시제품제작 완료 후 사업체에 시제품 납품 후 사용자평가를 거쳐 해당 의견 최종평가에 반영(공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점검 실시)

○ 최종보고 및 평가

- 연구개발 종료 후 7일 이내에 주관기관으로부터 최종보고서를 제출받아 평가위원회에서 붙임 6의 평가표에 따라 최종평가 실시

*「보조공학기기 지원 업무처리규칙」제57조

- 최종평가 결과, 위원별 평가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기준으로 80점 이상은 ‘적정’(성공), 80점 미만 60점 이상은 ‘보완’, 60점 미만은 ‘부적정’으로 평가
- ‘적정’(성공) 평가 과제는 기술료 징수 대상과제로 분류하고, ‘보완’ 평가 과제는 보완기간을 거쳐 평가위원회에서 재평가하며 평가 이후의 시점부터 지체상금을 징수할 수 있으며, ‘부적장’ 평가 과제는 평가위원회에서 제재여부를 판단하여 주관기관에 대해 제재에 필요한 조치 요구

12. 연구개발비 정산

○ 주관기관에서 최종보고서와 함께 제출한 개발비 정산서에 대해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사후 정산 실시

- 사후 정산 결과, 이상 없을 경우에 한해 공단 지원금 중 잔금을 지급하되, 부당한 집행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주관기관에 이를 통보하여 해당 금액 회수 조치

  *「보조공학기기 지원 업무처리규칙」제58조

13. 사후관리

○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결과로서 취득한 지적재산권 및 보고서 판권 등 무형적 결과물에 대해 공단 지원금 지분에 상당하는 권리 소유

  *「보조공학기기 지원 업무처리규칙」제59조

- 단, 소유기간은 기술료 납부 의무기간으로 하며 기술료 납부 완료 시에는 주관기관으로 이전

○ 최종평가 결과, '적정'으로 평가된 기술료 징수 대상과제에 대해서는 공단 지원금의 10%를 기술료로 징수

  *「보조공학기기 지원 업무처리규칙」제60조

- 주관기관에서 제출한 납부계획서를 검토·승인한 후, 현금으로 납부토록 조치하되, 분할 납부 시에는 지불보증을 위해 이행보증보험증권 징구

○ 연구개발 사업 종료 이후에도 보조공학기기의 활용 증진을 위해 상용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, 사후관리를 위해 실시되는 성과분석 및 각종 자료요청에 협조

  *「보조공학기기 지원 업무처리규칙」제62조

Ⅲ. 추진일정

사업 공고 및 제안서 접수 (1~2월)	o 보조공학기기 연구개발사업 공모(1.20.) o 공모기간: 1.20. ~ 2.19.
↓	
제안서 평가 (2~3월)	o 1차 사전검토(2.25. 예정) o 2차 대면평가(3.5. 예정)
↓	
과제 선정 (3월)	o 선행기술 확인 및 원가계산 o 과제 조정 및 선정(3월 중순)
↓	
협약 체결 및 착수 보고 (3월)	o 수정 사업 수행 계획서 제출 및 협약(~3.20.) o 통합 착수 보고(3월 말)
↓	
선금 지급 및 과제 수행 (4월~)	o 선금 지급(4월 초) o 과제별 월간 진도관리보고서 제출(매달 말)
↓	
중간평가 (8월)	o 중간보고서 제출 및 평가(8월 예정)
↓	
최종평가 및 정산 (11월~12월)	o 최종보고서 제출 및 평가(11월 말) o 사업비 정산 및 잔금 지급(12월 초)
↓	
사후 관리 (12월~)	o 기술료 징수(공단지원금의 10%)